

초당대학교 학칙 (일부/전부)개정(안)

1. 개정 이유

- 입학 취소 시 입학취소일을 등록금 환불 기준일로 명시하고자 함
-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4(입학허가의 취소)를 준용하여 입학취소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명시하기 위함
- 외국인유학생자격으로 2~4학년으로 편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규정(외국인유학생입학내규)이 제정되어 학칙에 외국인유학생 편입학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편입학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입학취소일을 기준으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등록금을 반환함(제15조 제3항)
- 허위 입학전형 자료 제출, 대리응시, 시험 불공정 행위 등 각종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취소 사항 조항 신설(제16조의2)
- 외국인유학생 입학전형으로 편입학하는 경우 외국인유학생입학내규 기준을 적용(제19조)